소방청 공고 제2025-127호

2025년 소방공무원(법무분야) 채용시험 공고

2025년 소방공무원(법무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소 방 청 장

Ⅰ. 채용예정인원 (시도 8명)

채용구분	채용분야	채용예정계급	해당시도	채용예정인원 (양성)
계				8
경력경쟁 채용시험	법무분야	소방경	대구	1
			대전	2
			경기	1
			충북	1
			충남	1
			경북	1
			제주	1

1)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2)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시도 소방본부**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변경사항은 **소방청 및 119고시(http://119gosi.kr) 누리집(이하 "119고시"라 한다)**을 통하여 재공고합니다.

Ⅱ. 시험일정

시험단계	시험절차	채용분야	시험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25. 8. 11.(월)					
원서접수: **'25. 8. 18.(월). 10:00 ~ 8. 22.(금). 18:00**					
1차	서류전형		-	**8. 29.(금) 한**	9. 2.(화)
2차	종합적성검사(공통)		9. 2.(화)	**9. 12.(금)**	-
3차	면접시험			**9. 17.(수) ~ 19.(금) ※ 기간 중 하루**	10. 1.(수)

1) 응시번호는 '25. 8. 29.(금) 10:00부터 119고시 마이페이지(원서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2)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Ⅲ.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5. 8. 18.(월) 10:00 ~ 8. 22.(금) 18:00

※ 응시지역은 단일 지역만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119고시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2)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

4)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 접수내역)

5)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시험절차마다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다. (**응시수수료**) 소방경 7천 원

Ⅳ.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

1 1차 시험: 서류전형

가.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시행

나. (**제출기간**) '25. 8. 18.(월) 10:00 ~ 8. 22.(금) 18:00

다. (**제출방법**) 119고시(119gosi.kr)를 **통한 제출**<원서접수시 서류제출>

라. 응시자격요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마.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5. 9. 2.(화) 14:00 / 119고시

분야	제출서류
법무 분야	① 사법연수원 수료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 구비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특이사항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86) 후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2 신체검사

※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발급은 최대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시험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체검사 받기를 권고함

가. (**검사방법**) 소방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방법**) **면접시험 당일(면접시험일 별도공고 예정) 제출**

☑ 신체검사 유의사항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런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함

※ 약물검사(TBPE)는 3~4일 소요되며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 '색각' 이상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종합병원에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은 후 시험응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함
- 병원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 후 검사서 발급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압인 또는 계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이 되어 있을 것

다.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라. 콘택트렌즈나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서는 인정하지 않음. **특히 청력·혈압·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함**

바.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된 사람은 소방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함. 정밀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3차 시험: 종합적성검사

가. (**시험일자**) '25. 9. 12.(금)

나. (**시험공고**) '25. 9. 2.(화) 14:00 / 119고시

다.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사전 제공되며, 면접시험 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응시 불가

4 4차 시험: 면접시험

가. (**시험일자**) '25. 9. 19.(금)

나. (**시험공고**) '25. 9. 2.(화) 14:00 / 119고시

다. (**면접위원**) 2명 이상(외부위원 1/2 이상)

※ 면접 중 위원 회피(기피) 시에도 2명 이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

라. (**시험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전조사서 작성 등 면접시험 공고시 별도 안내 예정)

※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평정점수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팀워크 및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마.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별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5 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공고**) '25. 10. 1.(수) 14:00 / 119고시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아래 표의 비율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채용분야	시험종류	적용비율	비고
법무	면접시험	면접 100%	

다. (**추가 합격자 결정**)

1)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 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합격증명서 발급)

1) 발급방법: 합격자 발표 이후 희망자(수수료 없음)

2) 신청방법: 119고시(119gosi.kr) 활용

Ⅴ.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구분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1]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025. 9. 19.)
	응시연령	2025년도 기준(다. 응시연령 참고)
	응시자격요건의 자격(변호사 자격) [2]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025. 9. 19.)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모든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나. 응시 결격사유 등

1)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④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2) 복수국적자 임용

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③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임용 전** 또는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시험에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함(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응시연령

분야별	계급	연령	생년월일
법무분야	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84. 1. 1. ~ 2002. 12. 31.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1)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2)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7

마. 자격증명 요건: **최종시험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바. 담당예정업무

구분	담당예정업무
대구	- 연간 법무감찰업무 기획 수립 및 조정 - 법률 자문 및 소송, 소청, 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업무
대전	-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관련 업무 등 - 소방활동 방해 및 법령 위반 사범 수사 업무 등
경기	-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관련 업무 - 소방활동 방해 및 법령 위반 사범 수사 등 업무
충북	-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관련 업무 - 소방활동 방해 및 법령 위반 사범 수사 등 업무
충남	-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관련 업무 - 소방활동 방해 및 법령 위반 사범 수사 등 업무
경북	-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관련 업무 - 소방활동 방해 및 법령 위반 사범 수사 등 업무
제주	-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관련 업무 - 소방활동 방해 및 법령 위반 사범 수사 등 업무

법무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법무	소방경	8명

임용예정기관명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주요업무	○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관련 업무 지원 및 처리 ○ 소청.소송 등 법률 자문 및 손실보상 운영, 처리 ○ 소방활동 방해(폭행 등) 사법수사 지원 및 특별감찰 등 ○ 소방 관계법령 제·개정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사고

필요지식	○ 각종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등에 관한 법령 및 절차에 관한 지식 ○ 법률 및 행정규칙 제·개정을 위한 법제 일반지식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법무분야	
	자격 및 경력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우대요건	○ 해당 사항 없음	

Ⅵ. 시험위원 위촉 및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1 시험위원 위촉

가. (위원선정)

1) 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또는 실무에 정통한 사람으로 시험위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사람으로 구성

2) 위원은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위원을 별도로 구성

3) 시험 단계별 외부 시험위원은 1/2 이상으로 구성

4) 시험실시기관(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판단) 근무자 또는 3년 이내 근무경력자가 응시할 경우 전원 소속 장관이 다른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위촉

나. (위원구성) ※ 시험위원 명단은 비공개 처리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 위원: 총 2명 이상	· 위원: 총 2명 이상	· 위원: 총 2명 이상

2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 외부참관인 제도 운영시 채용점검위원회 생략 가능

가. (구성) 위원장 포함 2인 이상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 포함

1) (내부위원) 인사·감사 또는 시험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 중앙부처·지자체 소속 공무원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나. (시기) 최종합격자 발표 前 채용점검위원회 개최·확정

※ 관련규정 준수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인 후 최종합격자 결정

Ⅶ.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장, 「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합니다.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기재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최종합격자가 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지정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취소)

Ⅷ.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최종합격자 발표 후 10일 내)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됨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할 수 있음

마.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 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아.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

1) 시험일정: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

2) 서류제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6)

※ 문의전화: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붙임 1】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지 8]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수험번호	응시 분야	성명	생년월일	사진 (3㎝×4㎝)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TBPE 검사 포함)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 합 격 [ ] 불 합 격 [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약물(TBPE)검사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상(음성)이면 정상으로 작성하시고, 이상소견(양성) 있을 시에는 불합격 사유 또는 판정보류 사유에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응시 결격사유, 복수 국적자의 임용 및 시험의 정지, 무효 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참고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3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등) 제3항제5호

○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업·직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경력을 의미하고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시간제(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 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 **전부를 인정(이 규정에 따른 상근근무란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근무: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경력 계산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때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참고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참고 4-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3

구 분	내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구 분	내용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구 분	내용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는 제외)인 경우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참고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 신체검사 지정병원: 80개소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화번호	검사 가능 시기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000(내선 2) 02-2276-7158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5층, 종합건강진단센터	1577-0075 02-870-2039	
3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별관 3층 건강검진센터	02-2276-2335 02-2276-2355	'25. 2월
4	경찰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가락동),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802	
5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6	부산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061	
7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8	좋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80 (남천동)	051-610-9865	
9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053-200-5791	
1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신당동)	053-258-4171	
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대명동)	053-650-3534	
12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387	
13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53-940-7522	
14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053-200-7101~2	
15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176	
1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수로 56, 뇌병원 3층 건강관리센터	032-280-6056	
17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	032-836-1733	
18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032-500-0266	
19	인천적십자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032-899-4332	
20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032-290-3333	
21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300	
22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0, 8535	
23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07	
24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042-670-5247	
25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 동구 대학병원로 25	052-250-8349	
26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울산 중구 태화로 239	052-241-1471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 화 번 호	검사 가능 시기
27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052-259-5264	
28	엔케이세종병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나성동)	044-850-7888	
29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031-219-5608	
30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3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5334	
32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032-340-2169	
33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031-412-5390	
34	광명성애병원	경기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02-2680-7539	
35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1577-8013	
36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032-621-5500	
37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경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37	031-8041-3038	
3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정자동)	031-888-0576	
39	성남시의료원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성남시의료원 (태평동)	031-738-7007	
40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일동)	031-500-1182	
41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031-828-5162	
42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신읍동)	031-539-9334	
43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금촌동)	031-940-9109	
4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031-8046-5131	
45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313	
4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 2	
47	청주성모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043-219-8795	
48	청주효성병원	충북	청주 상당구 단재로 44	043-221-5000	
49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333	
50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041-962-1232	
51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167	
52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77	
53	보령 아산병원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041-930-5555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 화 번 호	검사 가능 시기
54	백제병원	충남	충남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취암동)	041-730-8985	
55	당진종합병원	충남	충청남도 당진시 반촌로 5-15, (시곡동)	041-357-0100	
56	아산충무병원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81, (모종동)	041-536-6757	’25. 5월
57	천안충무병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쌍용동)	041-570-7569	
58	서산중앙병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 (수석동)	041-661-1063	
59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6	
60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5	
61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군산의료원)	063-472-5151	
62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472	
63	성가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907-7100	
64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271	
65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759	
66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1860	
67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29-8212	
68	포항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054-245-0115	
69	김천제일병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신음동)	054-420-9478~9	
7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25. 3월
71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055-750-1325	
72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34	
73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2층 건강증진센터	055-214-2050	
74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53	
75	창원한마음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055-225-1302	
76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298	
77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0	
78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608	
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064-730-3029	
80	한국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삼도일동)	064-750-0701	

참고 5-1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5개소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국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320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031-787-2114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 병원(80개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위에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정기준

1색각(적색)			2색각(녹색)			3색각(청색)			색맹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O	불합격	불합격	O	O	O	O	O	O	불합격

↳ 색맹(녹색맹 포함)은 모두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소 방 청